

2020년도
영동읍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영 동 군

(기 획 감 사 관)

- 2020년도 영동읍 -

감사내용 및 결과 공개문

《 감사내용 》

■ 기간 및 범위

- 2020. 5. 11. ~ 5. 14.(4일간) / 2017. 4월부터

■ 감사반 : 기획감사관 외 5명

■ 감사중점

- 예산·회계 집행 실태
- 각종 보조사업의 지도·점검 적정여부
- 각종 소관업무 확인, 점검, 관리 등 업무처리실태

《 감사결과 》

■ 총 지적건수 : 20건

■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20건 (주의 11건, 시정 9건)
- 재정상 조치 : 회수 5건 / 1,200,140원
- 신분상 조치 : 해당없음

《 수범사례 》

■ 위기가구 발굴로 선진 복지행정 적극 추진

[GO 투게더DAY 운영 및 사랑의 행복바구니 지원]

- 직원들의 행복바구니 기부(식료품, 생활용품)를 통한 맞춤형 복지 제공

- 붙임 1. 주요지적사항 1부.
2. 감사결과 처분서 20부. 끝.

주요 지적사항

연번	부서명	지 적 사 항	처분(안)		
			행정상	신분상	재정상
총계	영동읍	총 20건 [공통4, 총무7, 주민복지2, 민원봉사1, 산업6]	주의 11 시정 9		회수 5건 1,200,140원
1	공통	◦ 공가 사용 부적정	주의		
2		◦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준수 및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주의		
3		◦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시정		
4		◦ 소규모 공사 집행 부적정[계약 미체결]	주의		
5	총무	◦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보고 소홀	주의		
6		◦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주의		
7		◦ 여비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186,200원
8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208,950원
9		◦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미준수	주의		
10		◦ 청백-e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시정		
11		◦ 민방위 대상 편성 제외자 심의 소홀	주의		
12	주민복지	◦ 장애등급 재판정 처리 업무 소홀	주의		
13		◦ 종량제 봉투 관리 업무 소홀	주의		
14	민원봉사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구 소홀	주의		
15	산업	◦ 소규모사업 감액동의서 정산 부적정	시정		회수 265,870원
16		◦ 소규모사업 준공신고서 검토·확인 소홀	시정		회수 471,760원
17		◦ 표시기간 만료된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시정		
18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주의		
19		◦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소홀	시정		
20		◦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등 보상금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67,360원

【 일련번호 : 1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공가사용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현황

사용일	성 명	직 급	사유	비고
2018.05.09.	**8급	A	충청북도 전입시험	
2018.05.24.	**8급	A	충청북도 전입시험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공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는 사항 중 하나로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한 때는 규정되어 있으나, 전입시험 응시는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그럼에도, 영동읍에서는 공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8급 A의 전입시험 응시에 대해 공가처리 하는 등 복무관리에 소홀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당직근무 출퇴근 시간 미 준수 및 당직근무일지 작성 소홀

【현 황】

○ 당직근무 시 청사 무인전자 보안장치 개폐 지연현황

구분	근무일자	개폐시간		당직근무자		비고
		해 제	세 트	직 급	성 명	
1	2017.07.15.(토)	09:04:31	18:07:39	**8급	A	
2	2017.11.10.(금)	08:03:22	21:08:00	**8급	B	
3	2017.11.17.(금)	08:11:13	21:36:03	**7급	C	
4	2018.05.27.(일)	05:51:19	17:59:12	**8급	B	
5	2018.10.31.(수)	08:01:39	23:10:31	**6급	D	
6	2018.11.20.(화)	08:04:49	23:50:06	**8급	E	
7	2019.08.18.(일)	07:35:27	17:57:34	**9급	F	
8	2019.12.24.(화)	08:04:18	20:55:30	**8급	G	
9	2020.03.31.(화)	08:19:14	22:34:36	**9급	H	

○ 당직근무 후 당직근무일지 미작성 현황

구분	근무일자	당직근무자		비고
		직 급	성 명	
1	2017.04.09.(일)	**7급	C	정
		**8급	N	부
2	2017.05.12.(금)	**8급	O	
3	2019.03.02.(토)	**7급	P	정
		**9급	Q	부

구분	근무일자	당직근무자		비고
		직 급	성 명	
4	2019.08.17.(토)	**6급	D	정
		**7급	I	부
5	2019.08.31.(토)	**7급	I	정
		**8급	J	부
6	2019.09.23.(월)	**9급	F	
7	2019.10.07.(월)	**7급	I	
8	2019.10.08.(화)	**6급	K	
9	2019.10.10.(목)	**7급	I	
10	2019.11.13.(수)	**7급	L	
11	2019.12.10.(화)	**8급	G	
12	2019.12.11.(수)	**7급	I	
13	2020.01.09.(목)	**8급	G	
14	2020.01.15.(수)	**7급	M	

【위법부당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서는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규칙」 제4조 당직의 구분에는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일직근무 포함)가 개시될 때까지로 하며, 제8조 제3항에 따라 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 결과 상황보고(야간 사건사고 발생 상황,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등)를 면장에게 하여야 함.
- ※ 제19조에 따라 읍면에서는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 준용

- 그러나, 영동읍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현황1]과 같이 **8급 A 등 7명은 평일, 공휴일 및 토요일 당직근무 등을 하면서 출근 시 7회 지각(평일 당직근무자의 경우 익일 오전 08:00까지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해제하여야 함)으로 인하여 무인전자 보안장치 해제를 지연하였고, 퇴근 시 2회 무인전자 보안장치를 18:00시 이전에 세트를 하고 퇴근하였으며,
- 특히, [현황2]와 같이 **7급 C 외 12명의 경우 감사일 현재까지 총 14회 당직근무종료와 동시에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위한 당직근무일지 작성 및 결재를 득하지 않았으며, 특히, ** 7급 I의 경우 총 5회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지역개발채권의 매입 부적정

【현 황】

- 부적정 매입 내역

(단위:천원)

지 출 건 명	지급일	매입기준액	매입가 (a)	적정가격 (b)	차액 (a-b)	비고
2017년 한해대책 양수기 구입	2017.06.09.	2,280	-	30	-30	매입누락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 등 구입	2017.06.09.	3,272	-	40	-40	매입누락
화산1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2019.05.02.	11,666	300	290	10	과다매입
봉현리 농수로 및 농로포장공사	2019.06.14.	10,907	300	270	30	과다매입

【위법부당사항】

- 지역개발채권(공채)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7조(공채의 매입대상 및 기준) 제1항『별표1』(공채매입의 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은 총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100로 매입하여야 하고, 매입액 산출결과 1건당 10,000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 10,000원단위로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럼에도, 영동읍에서는 17. 6. 9. 지급한 □□□□와 계약한 2017년

한해대책 양수기 구입 외 1건에 대하여 매입을 누락하였고, 2019. 5. 2. 지급한 □□□□□□□과 계약한 화신1리 농배수로 정비공사 외 1건에 대하여 적정가격을 초과하여 지역개발채권 매입한 필증을 접수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누락된 채권매입필증을 징구하시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 공사 집행 부적정[계약 미체결]

【현 황】

○ 부적정 집행현황

예산과목	집행일자	건 명	금액(원)	지급처	비 고
시설비	2020.04.03.	영동읍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사업(1차) 준공금 지급	4,350,000	주OOOO	

【위법부당사항】

- 지방계약법에 의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 집행과 지출결의서 등을 사용하여 이면에 계약에 대한 기본 이행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송납하는 날인을 하여 약식계약을 체결토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영동읍에서는 2020년 영동읍 시가지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집행하면서 계약 자체를 생략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공사대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보고 소홀

【현 황】

○ 회계관계 공무원 이동 현황

회계관계공무원 관직	발령일자	변경전	변경후	비고
징수·재무관	2017.07.01.	R	S	미보고
	2018.07.01.	S	T	미보고
	2020.01.01.	T	S	미보고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2018.07.01.	U	V	보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2018.07.01.	W	X	보고
	2020.01.01.	X	Y	미보고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르면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그럼에도, 영동읍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인사이동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이 변경 되었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징수, 재무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 대해서 이동보고를 하지 않는 등 회계 관련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 소홀

【현 황】

○ 수당지급 지연내역

(단위:천원)

적 요	채 권 자	지급명령 번 호	지급일	지급액	비고
2017. 5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221호	2017. 5.24.	6,200	
2017. 7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356호	2017. 7.21.	6,200	
2017. 8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413호	2017. 8.22.	6,200	
2017.11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587호	2017.11.21.	6,200	
2017.12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711호	2017.12.27.	6,200	
2018. 7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435호	2018. 7.19.	6,200	
2018.10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591호	2018.10.22.	6,200	
2018.11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672호	2018.11.26.	6,200	
2018.12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743호	2018.12.21.	6,200	
2019. 1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37호	2019. 1.28.	6,200	
2019. 2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75호	2019. 2.21.	6,200	
2019. 3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117호	2019. 3.19.	6,200	
2019. 4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218호	2019. 4.22.	6,200	
2019. 5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255호	2019. 5.21.	6,200	
2019. 6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333호	2019. 6.14.	6,200	
2019. 8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471호	2019. 8.12.	6,200	
2019. 9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559호	2019.10. 2.	6,200	익월
2019.10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579호	2019.10.21.	6,200	
2019.11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656호	2019.11.19.	6,200	
2019.12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728호	2019.12.19.	6,200	
2020. 2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94호	2020. 2.19.	6,200	
2020. 3월 이장수당지급	Z 외 32	제145호	2020. 3.19.	6,200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실비변상)에 따라 이장에게는 임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그럼에도, 영동읍에서는 2017년 5월 외 21건의 이장 월정수당을 지급하면서, 공무원 보수 지급일인 20일에 지급하지 않고 조기 또는 지연[특히 2019. 9월 수당의 경우 익월지급] 지급하여 이장 월정수당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7 】

감사결과 처분서

- 【행정상 조치】 시정
- 【재정상 조치】 회수(186,200원)
- 【신분상 조치】 없음
- 【제 목】 여비 지급 부적정
- 【현 황】

1. 근무지 내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지급액(원)	적정지급액(원)	과오지급액(원)	부적정사유
합 계				236,200	130,000	106,200	
'17.05.02.	R	'17.03.28.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20,000	10,000	10,000	관용차량 사용
'17.05.02.	R	'17.03.29.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20,000	10,000	10,000	관용차량 사용
'17.05.02.	R	'17.03.30.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20,000	10,000	10,000	관용차량 사용
'17.05.02.	R	'17.03.31.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20,000	10,000	10,000	관용차량 사용
'17.08.31.	S	'17.08.07.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26,600	20,000	6,600	식비지급
'17.08.31.	S	'17.08.24.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16,600	10,000	6,600	식비지급
'17.08.31.	S	'17.08.25.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16,600	10,000	6,600	식비지급
'17.08.31.	S	'17.08.28.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16,600	10,000	6,600	식비지급
'17.08.31.	S	'17.08.29.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26,600	20,000	6,600	식비지급
'17.08.31.	S	'17.08.30.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16,600	10,000	6,600	식비지급
'17.08.31.	S	'17.08.31.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16,600	10,000	6,600	식비지급
'18.12.27.	T	'18.12.04.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10,000	-	10,000	월액여비 중복지급
'18.12.27.	T	'18.12.17.	현장대화행정 업무추진	10,000	-	10,000	월액여비 중복지급

2.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부적정 지급 내역

지급일	대상자	출장일	출장내용	구분	지급액(원)	적정지급액(원)	과오지급액(원)	부적정사유
합 계					200,000	120,000	80,000	
'18.12.27.	AA	'18.12.17.~12.18.	지방세 고액 상습 관외체납자 징수	일비	60,000	40,000	20,000	1박2일 출장에 대해 2박3일 기준 여비 적용
				식비	60,000	40,000	20,000	
				숙박비	80,000	40,000	40,000	

【위법부당사항】

-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은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호 및 별표1에 따른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위와 같이(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 지급하며,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근무지 외 국내 출장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규정 및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의 규정에 따라 1일당 일비 2만원, 식비2만원, 숙박비 1박당 4~7만원(정액지급시 4~6만원, 실비정산시 5~7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음.
- 그럼에도 영동읍에서는 위 [현황1]과 같이 **5급 R 외 2인에 대한 근무지내 출장여비 지급 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으나, 일비를 감액하여 지급하지 않고 일만원을 초과지급하였으며, 식비를 지급하고, 월액여비와 중복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현황2]와 같이 **6급 AA의 근무지 외 국내출장여비 지급 시 2일 일정의 출장에 대해 3일 일정의 출장여비를 지급하는 등 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고 과오지급된 여비 186,20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208,95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현 황】

○ 비상근무 미준수 내역

근무일자	직급	성명	휴일	근무구분	출근	퇴근	미준수	적정	비고
			구분		시간	시간			
					(분)	(분)	(분)	(분)	
2017-04-08	**8급	AB	토요일	현업	10:07	18:00	233	240	산불비상근무
2017-04-22	**8급	AB	토요일	현업	10:14	18:00	226	240	산불비상근무
2017-11-26	**8급	AC	휴일	현업	10:02	18:00	238	240	산불비상근무
2017-12-29	**9급	AD	토요일	현업	9:07	18:00	53	480	산불비상근무
2019-03-23	**6급	V	토요일	현업	10:00	18:00	240	240	-
2019-03-31	**6급	V	휴일	현업	10:00	18:00	240	240	-

○ 시간외근무수당 과오지급 내역

[단위 : 시간, 원]

직급	성명	단가	실지급내역				적정지급내역				차액	비고
			기본	초과	합계	금액	기본	적정 초과	합계	금액		
합계			40	91	131	1,238,070	40	70	110	1,029,120	208,950	
**8급	AB	8,980	10	31	41	368,180	10	23	33	296,340	71,840	2017.4월분
**8급	AC	8,980	10	17	27	242,460	10	13	23	206,540	35,920	2017.11월분
**급	AD	8,117	10	20	30	243,510	10	19	29	235,390	8,120	2017.12월분
**6급	V	11,634	10	23	33	383,920	10	15	25	290,850	93,070	2019.3월분

【위법부당사항】

-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며,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개인별, 초과근무일별 초과근무 사전명령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근무한 자는 근무종료 후 지문인식 등을 통해 초과근무 내역을 확인하여야 함.
- 산림과에서 2017. 2. 17일 시행한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 적용 알림』 공문에 의하면(매년 시행), 읍면에서 산불방지대책에 따른 비상근무 시 휴일 및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10:00~18:00까지 근무를 하면 8시간 시간외근무수당을 적용하고, 근무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한시간을 미적용(휴일 및 토요일 4시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영동읍에서는 [현황1]과 같이 **8급 AB 외 3명에 대하여 상한시간을 초과하여 초과근무를 현업으로 신청하거나 비상근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현황2]와 같이 과다하게 산정된 시간외근무수당 208,950원을 행정과에 제출하여 지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추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및 직원교육을 실시하시고 과오지급된 수당 208,95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법인신용카드 이용대금 결제일 미준수

【현 황】

○ 결제일 미준수 현황

결제일	지출일	내 용	금액(원)	비고
2019. 9. 27.	2019. 10. 21.	맞춤형복지 전기차 충전료 지급	2,430	
2020. 3. 27.	2020. 5. 11.	맞춤형복지 전기차 충전료 지급	3,003	
2020. 4. 27.	2020. 5. 11.	맞춤형복지 전기차 충전료 지급	2,927	
2020. 4. 27.	2020. 5. 11.	맞춤형복지 전기차 충전료 지급	1,240	
2020. 4. 27.	2020. 5. 11.	맞춤형복지 전기차 충전료 지급	1,477	
2020. 4. 27.	2020. 5. 11.	맞춤형복지 전기차 충전료 지급	3,594	

【위법부당사항】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받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6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신용카드 사용시 회계처리 절차에 따르면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여 대금청구서 등에 의하여 지급을 결정(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토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영동읍에서는 2019. 10. 21. 맞춤형복지 전기차 충전료 지급 외 5건에 대해 결제일이 지난시점에 집행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0】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조치 소홀

【현 황】

○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처리실적

대상업무	감사자 추출건수	처리건수	처리율	적기처리 건수	적기 처리율	적기승인 건수	적기 승인율	미처리 건수	비고
지방세	1	1	100%	1	100%	0	0%	0	
세외수입	2	2	100%	2	100%	0	0%	0	

【위법부당사항】

-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백-e 시스템 상시모니터링 결과를 매월 확인하고 적기에 조치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 영동읍에서는 2017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현황]과 같이 청백-e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내역에 대하여 적기에 처리를 완료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않는 등 공직비리 사전예방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미처리된 모니터링 결과를 승인처리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1】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민방위대상 편성 제외(심사제외)자 심의 소홀

【현 황】

○ 읍·면·동 민방위협의회 미구성

○ 민방위협의회 심의를 통한 심의 제외 절차 미이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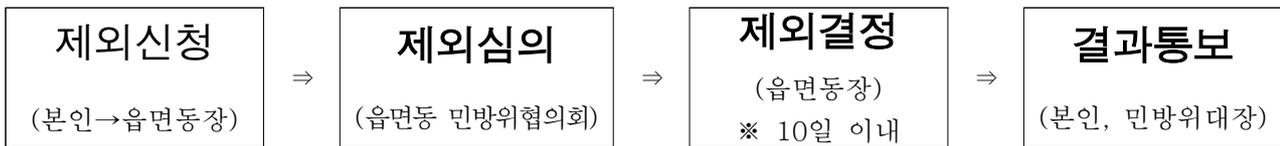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18조

- 심의 대상자

·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인 심신 장애인

·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

- 심의 절차 (처리기한 총13일, 제외결정은 10일 이내 처리)



【위법부당사항】

○ 「민방위 기본법」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민방위대의 편성 및 편성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민방위대 편성 제외대상자의 심사를 위하여 「민방위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외심의 대상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자의 부상정도인 심신장애인 또는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 능력이 매우 부족한 만성허약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제외토록 되어 있음.

○ 그럼에도, 영동읍에서는 2019년도 민방위대 편성 과정에서 지역민방위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또한 제외심의 대상자 조사를 하지 않는 등 민방위대 편성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2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장애등급 재판정 처리 업무 소홀

【현 황】

○ 지연처리 현황

신 청 인			장애유형	재진단기한	재진단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	-	뇌전증	2017.07.25.	2017.08.17.	
-	-	-	지체 (하지관절)	2017.08.24.	2017.08.30.	
-	-	-	지적장애	2017.12.06.	2018.02.09.	
-	-	-	지적장애	2017.12.28.	2018.04.24.	
-	-	-	시각	2018.04.08.	2018.04.18.	
-	-	-	뇌병변	2018.11.07.	2018.12.18.	
-	-	-	지적장애	2018.11.15.	2018.11.23.	
-	-	-	시각	2018.11.26.	2019.01.04.	
-	-	-	정신	2019.08.19.	2019.10.02.	심한 장애

【위법부당사항】

○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장애등급재판정통보서를 3개월 이하의 기한을 정하여 소정 기일 내에 장애등급을 재판정하여야 함을 통보하고 재진단 기

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함을 안내하여 지정도래 기한 내에 재판정을 받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하고 2주간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청취를 받아야 함.

- 그러나, 영동읍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대상자 ○○○ 외 8명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 안내서를 발송하여 재판정이 실시되도록 하여 장애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나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재판정 촉구서를 발송하지 않은 채 장애 등급 재진단 기한을 경과하여 지연 처리하는 등 장애등급 재판정 처리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3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종량제 봉투 관리 업무 소홀

【현 황】

-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관리대장(2018년도)

The image shows two side-by-side spreadsheets. The left spreadsheet is titled '2018년 1월 수불대장' (2018 January Receipt/Payment Ledger) and the right is '2018년 12월 수불대장' (2018 December Receipt/Payment Ledger). Both tables have multiple columns with numerical data, likely representing waste management metrics such as quantity, cost, or status. The data is organized in a grid format with various colored highlights.

【위법부당사항】

- 「영동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및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료공급) 에 의하면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공급 및 판매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무상제공 하는 등 관리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 「영동읍 읍면 전결사항 규정」 [별표] (단위업무 22.환경 - 3.종량제 규격봉투 관리)에 따라 부읍면장 전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영동읍에서는 쓰레기봉투를 공급 및 판매 또는 무상제공 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황]과 같이 2018년도에는 쓰레기봉투의 일일 발생한 수불 현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였으나, 담당자의 서명만 있는 채 담당팀장 및 부읍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쓰레기봉투 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4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징구 소홀

【현 황】

○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부적정 징구 현황

연번	성명	생년월일	재발급사유	신고일자	발급일자	수수료(원)		비고
						실수납액	정상수납액	
1	-	-	분실	2017.04.03.	2017.04.03.	무료	5,000	
2	-	-	분실	2017.06.20.	2017.06.20.	무료	5,000	
3	-	-	분실	2017.07.28.	2017.07.28.	무료	5,000	
4	-	-	자연훼손	2017.12.01.	2017.12.01.	5,000	무료	
5	-	-	분실	2018.01.09.	2018.01.09.	무료	5,000	
6	-	-	자연훼손	2019.04.25.	2019.04.25.	5,000	무료	
7	-	-	개명	2020.03.10.	2020.03.10.	5,000	무료	

【위법부당사항】

○ 「주민등록법」 제2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후 주민등록증의 분실이나 훼손, 성명, 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

는 경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등이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의 수수료 면제 대상은 ①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으로 분실, 훼손된 경우 ②성명, 생년월일, 성별의 변경 및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④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⑤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⑥재외국민이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영동읍에서는 [현황]에서와 같이 감사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징구하면서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 외 3명의 경우 총 2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어야 하나 면제해 주었으며, ○○○ 외 2명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였어야 하나 총 1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등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5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265,87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감액동의서 정산 부적정

【현 황】

공 사 명	도 급 액 (천원)	도 급 자	계 약 일	착 공 일	준 공 일	회수금액 (원)	비고
계(4건)						265,870	제경비포함
오정리(안오정) 배수로정비공사	11,205	**건설주 오**	2018.04.13	2018.04.16	2018.05.14	79,630	환경보전비
탑선리 세천정비공사	10,929	**건설(합) 김**	2018.04.25	2018.04.26	2018.05.18	72,600	"
봉현리 농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14,698	**건설주 권**	2019.04.17	2019.04.17	2019.05.20	95,130	"
부용리 농로포장공사	10,437	(합)**건설 김**	2019.04.23	2019.04.29	2019.06.10	18,510	건기대여대 금지급보증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비의 세부산출 비용은 제3항 “별표8”의 기준에 의거 산출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환경오염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 시행규칙 제34조의4 규정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산정·반영하여야 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간 합의한 경우와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영동읍에서는 '18. 4. 13. **건설(주)과 계약하여 완료한 '오정리(안오정) 배수로정비공사' 외 2건에 대하여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환경보전비' 관련 증빙서류가 누락 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247,360원(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음.
- 또한 '19. 4. 23. (합)**건설과 계약하여 완료한 '부용리 농로포장공사'에 대하여 확인결과,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사용이나 면제사항 여부를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건설업자가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여 18,510원 (제경비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였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과오 지급된 공사비 265,87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6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471,76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소규모사업 준공신고서 검토 · 확인 소홀

【현 황】

공 사 명	도 급 액 (천원)	도 급 자	계 약 일	착 공 일	준 공 일	회수금액 (원)	비고
주곡리 배수로개선공사	14,242	**건설(주) 배**	2019.04.15	2019.04.17	2019.05.20	471,760	폐기물처리 14톤

【위법부당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 제11조(공사 관련서류 검토·보고)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준공단계에서 준공검사원 등 관련문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 지침 제24조(시공사 제출 서류의 검토) 규정에 의거 공사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하는 준공검사원의 증빙서류를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하며,
- 지침 제54조(기성 및 준공업무 관련)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확인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영동읍에서는 '19. 4. 15. **건설(주)과 계약하여 완료한 '주곡리 배수로개선공사' 준공신고서를 접수하면서, 공사로 인해 발생한 건설폐기물 처리에 따른 증빙서류를 건설업자가 제출하지 않았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정산 처리하여 471,760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과오지급된 공사비 471,76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7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표시기간 만료된 옥외광고물 관리 소홀

【현 황】

- 영동읍에서는 「영동군 사무의 위임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신고 수리 및 허가,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및 법 제10조에 따른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허가 취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영동읍에서 감사기간 중 처리한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건은 등록대에서 총300건으로 확인되며, 대장상 현존하는 옥외광고물 건수는 1198건, 이 중 512건은 합법 광고물로 파악되고, 686건은 기간 미연장 등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인 것으로 파악 됨. 특히 감사기간 중 (2017.4 ~ 2020. 4.) 표시기간이 종료된 광고물이 99건 임.

【위법부당사항】

-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 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 규정에 따라 위반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함.
- 아울러,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광고물의 표시 허가, 신고, 연장을 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전산대장 같음 가능)하여야 함.
- 그럼에도, 영동읍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표시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에 대해 폐업여부 확인 등을 통한 대장정리 및 해당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등 옥외광고물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표시기간이 만료된 광고물에 대해 대장정리 및 행정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8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 업무처리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구비서류 미비현황

신고일	신고 사항	신청인		차량번호	비고
		주소	성명		
2017.03.13.	변경신고	-	-	경기부천시1209	양도증명서 양수인 기재 누락 인지세 미납
2017.03.13.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959	인지세 미납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4.05.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428	인지세 미납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4.27.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258	인지세 미납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4.28.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327	인지세 미납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5.18.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103	인지세 미납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6.05.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762	인지세 미납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6.19.	변경신고	-	-	대전대덕아1514	인지세 미납
2017.06.21.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564	인지세 미납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6.26.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150	인지세 미납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6.26.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3451	인지세 미납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7.07.07.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091	인지세 미납
2017.08.11.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505	인지세 미납

신고일	신고 사항	신 청 인		차량번호	비 고
		주 소	성 명		
2017.08.18.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209	양도증명서 양수인 날인 누락 인지세 미납
2017.08.21.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091	인지세 미납
2017.08.31.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511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7.09.06.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4212	인지세 미납
2017.09.12.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197	인지세 미납
2017.09.14.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098	인지세 미납
2017.11.02.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257	양도증명서 양수인 날인 누락 인지세 미납
2017.11.21.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399	인지세 미납
2017.11.30.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327	인지세 미납
2017.12.29.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297	양도증명서 양도인 날인 누락 인지세 미납
2018.01.03.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254	양도증명서 양도·양수인 기재 누락 인지세 미납
2018.01.15.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993	인지세 미납
2018.02.09.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545	전자수입인지 전자적 소인 미처리
2018.04.02.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4269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4.02.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544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4.10.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540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차대번호 입력오류(직권정정 해당)
2018.04.24.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733	구비서류 없음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018.06.07.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4526	인지세 미납
2018.06.21.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597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주민등록번호 변경(직권정정 해당)
2018.06.21.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412	구비서류 없음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018.08.01.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752	구비서류 없음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증명서류)
2018.09.18.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1326	신고 대리인 증빙서류 누락
2018.12.18.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092	인지세 미납
2019.01.16.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3917	신고사항변경신청서 신고인 날인 누락 양도증명서 양도·양수인 날인 누락
2019.02.11.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014	인지세 미납
2019.02.11.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012	인지세 미납
2019.03.12.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684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해당
2019.04.22.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6702	민원서류 처리 부적정 이륜자동차 폐지신고 해당
2019.08.30.	변경신고	-	-	충북영동기5338	인지세 미납

【위법부당사항】 -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도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한다.),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실측확인서,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 이륜자동차 폐지신고증명서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인지세법」 제8조(납부)에 따라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소인)의 규정에 의하면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www.e-revenuestamp.or.kr)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영동읍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붙임] 현황에서와 같이 이륜자동차변경사용신고 시 구비할 서류의 종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륜자동차업무를 처리하였고,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 받지 않거나 분실한 경우 불필요한 서류(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분실에 따른 소유인 각서)를 추가로 징구하였으며, 특히, 신고서류를 접수한 후 신고·수리하면서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보완 요청을 하지 않거나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정부수입인지 발행을 확인하고 전자적 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사용” 되었음을 확인했어야 하나 전자적 소인 처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이륜자동차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19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없음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업무 소홀
【현 황】

○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 현황

상속인	피상속인	주소	차 량 번 호	사망일	적정상속일	상속일	지연기간
이**	이**	-	충북영동가 5505	2017.11.19.	2018.05.28.	2018.07.26.	60일
김**	김**	-	충북영동가 3091	2019.03.08.	2019.09.26.	2019.10.22.	27일

※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위법부당사항】

-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자의 성명(명칭)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상속의 경우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5호서식의 이륜자동차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법 제84조제4항6호의2에 따르면 같은 법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계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등)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영동군 사무위임 규칙」 제2조(권한재위임사항) 별표에 따르면 이륜자동차와 관련되어 권한이 재위임된 업무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업무는 읍·면장에 재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영동읍에서는 이륜자동차 변경(상속)신고 위반자 이** 외 1명의 이륜자동차사용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신고·수리하면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과태료 부과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고 누락된 과태료를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 일련번호 : 20 】

감사결과 처분서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회수(67,360원)

【신분상 조치】 없음

【제 목】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등 보상금 지급 부적정

【현 황】

○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 등 보상금 부적정 지급 현황

연도	마을명	신청자명	벼 재배면적(㎡)	지급액(원)	비고
합계		11명		67,360	
2017년	영동읍 중앙2리	-	940	7,450	우량종자
2017년	영동읍 계산2리	-	721	5,720	"
2017년	영동읍 양가리	-	959	7,600	"
2017년	영동읍 탑선리	-	688	5,450	"
2017년	영동읍 양가리	-	268	2,120	"
2017년	영동읍 회동리	-	694	5,500	"
2018년	영동읍 탑선리	-	940	8,810	"
2018년	영동읍 봉현리	-	721	6,760	"
2018년	영동읍 탑선리	-	959	8,990	"
2018년	영동읍 부용1리	-	688	6,450	"
2018년	영동읍 봉현리	-	268	2,510	"

【위법부당사항】

○ 벼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은 쌀 소비량 감소 및 가격하락에 대응한 농업인 소득안정을 기하고 순도 높은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지원으로 지역 명품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우수한 고품질 쌀 생산 및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매년 벼 재배농업인에게 도비 30%, 군비 70%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당해연도 0.1ha 이상의 벼를 재배하고 있는 충북도내 거주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공부확인 및 현지 확인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각 사업연도별 ha당 단가(2017년/79,350원, 2018년/93,820원)를 재배면적에 따라 산정하여 10원단위 미만은 절사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그러나, 영동읍에서는 2017년도 벼 우량종자 지원사업 보상금 총 106농가에 3,002,500원, 2018년도 벼 우량종자 지원사업 보상금 총 89농가에 3,002,380원을 지급하면서 벼 재배면적이 0.1ha미만인 경작자 영동읍 중앙2리 김** 외 10명에게 총 67,360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처분내용】

- 영동읍장은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적극 연찬하여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시고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상금 67,360원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